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

2024년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계획

2024.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JEONBUK STATE OFFICE OF EDUCATION
【 유초등특수교육과 】

2024년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계획

Ⅰ 추진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Ⅱ 추진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7조(통학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7조(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통학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각급학교에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Ⅲ 개요

○ 기간: 2024. 3. ~ 2025. 2.

○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통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및 보호자

○ 지급기준: 대중교통비 실비 및 유류비(km당 200원)

○ 지급방침: 1일 2회, 실제 통학일수 기준 보호자에게 지급

○ 심의 및 선정: 개별화교육지원팀

Ⅳ 세부 운영 계획

1 지원 대상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학교통학버스 노선 외의 원거리*를 통학하는 경우

* 원거리: 학교와 거주지간 통학 거리 1km 이상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중증장애*로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중증장애로 인하여 통학버스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에 회의 결과 반드시 기록)

* 중증장애: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 발달 및 지적 장애, 시각장애 등

○ 위 지원 대상 학생 중 독립적 통학이 어려워 등·하교를 동행하는 보호자

2 지원 제외 대상

○ 도보 통학생 및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서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 기숙사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단, 월요일과 금요일 등 정규 입·퇴사일의 통학비에 한하여 지급, 통학비 기준에 따름)

○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하나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지로 자가용 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통학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에서 통학 관련 지원을 받는 경우

3 지원 기준

지원기준		내용
거리 기준		- 학교와 실제 거주지간 통학 거리 1km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통학거리 산정)
대중교통 등의 범위		- 차량(버스, 자가용, 농어촌택시 등) ※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오토바이나 자전거 이용자는 제외
1일 지급 횟수		- 2회(등·하교 중 1회만 비용 발생 시 실제 발생 비용 지급)
산정 기준	학생	- 대중교통비: (학생 요금)×출석일수×2회 ※ 대중교통비: 시내·외 버스, 마을버스 등의 이용 요금
	보호자	- 대중교통비: (성인 요금)×출석일수×2회 - 유류비 실비: 200원×통학거리×출석일수×2회 ※ 자가용 이용 시 차량 기준 지급(학생, 보호자 별도 지급 안됨)
통학비 지급시기		-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결과에 따라 매월 또는 학기별 지급
신규 선정 또는 전·입학의 경우		- 신규 선정 또는 취소, 전·입학 등으로 통학비 지원 자격 취득이나 소멸 시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지급 - 자격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통학비 지원 심의 - 지역교육청 담당자 협의 후 정기 또는 수시 예산 신청
예산 지급 범위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편성 예산 범위 내 지원 - 통학비 신청이 누락되거나 예산 부족 등으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 학교 자체 예산으로 지원
집행 잔액		- 10만원 이상: 반납 - 10만원 미만: 반납 없이 타 용도로 사용 가능 - 해당기관은 집행잔액 결과 보고 (☞ *학년도 말 2월 지정일* 까지)

4 지원 세부 기준

○ **학교와 실제 거주지간 통학거리**가 **1km 이상**인 경우 지원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통학거리를 산출함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고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를 거쳐 통학비 지원 결정

○ 학생의 안전을 위해 이륜차나 자전거 등의 교통수단은 제외하고, 버스, 자가용, 농어촌택시 등 차량으로 등·하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대중교통비 발생 실비를 기준으로 1일 최대 2회 지원

○ 자가용 이용시 유류비 실비(km당 200원) 1일 최대 2회 지원

- 예: 1.8km×200원×2회×수업일수
- 차량기준 지급, 보호자·학생 별도 지급 불가

○ NEIS 출결사항을 확인하여 정규교육과정 내 실제 출석일수 지원

○ 통상적 교육과정에 따른 통학비만 지급

- 방학·토요프로그램 참여 등에 따른 통학비 미지급
- 원격수업 기간 중 수업 및 긴급돌봄 참여 등으로 등교하는 경우 통학비 지급
-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등교 또는 하교만 한 경우 해당일은 편도 금액 지급
- 현장실습 등으로 해당 기관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통학비 지급 가능, 단 취업이 확정된 전공과 학생은 제외
-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월요일과 금요일 등 정규 입·퇴사시 발생하는 금액에 한하여 지급 (타시도 학생의 경우 시외버스비 기준 실비 지급)

○ 통학비는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결과에 따라 매월 또는 학기별 지급 가능

○ 신규 선정 및 전·입학 등으로 지원 자격 취득 또는 소멸시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 자격 취득일은 포함하고, 자격 소멸일은 미포함
- 신규 자격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통학비 지원 심의

○ 통학비 신청이 누락 되거나, 예산의 부족 등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학교 자체 예산으로 지원

5 지원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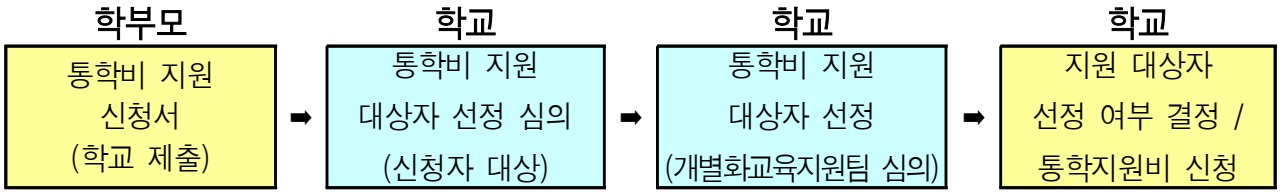

○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를 통한 통학비 지원

- 통학비 지원 여부는 학년도 기준, 매해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에 따라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선정 여부를 결정함

※ 기존에 통학비를 받고 있던 학생도 지원 근거를 검토하여 판단 후 지원

-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운영하여야 함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원, 일반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구성
- 특수학급 미설치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인근 특수학교(급)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 및 관련서비스 내용 결정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장애학생 특수교육 지원서비스」운영 투명성 제고**(2019. 7. 15.)

- 통학비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기구 구성 시, 심의위원 자격을 명시하여 구성 (「특수교육법」에 구성된 자격자를 포함하여 심의기구 구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6 지원 절차 및 업무흐름도

학부모	- 통학편의 지원 신청 〈제출 서류〉 · **[한글 서식1]**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 **[한글 서식2]**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학교	-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 **[한글 서식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신청 접수 및 심의 결과 명부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 보관 - 통학비 지원 신청서 제출 · **초·중학교[엑셀 서식1,2] → 교육지원청** · **고·특수학교[엑셀 서식1,2] → 도교육청**
⇩	
교육청	- 교육지원청 및 각 학교로 통학비 지원 예산 재배정 및 교부
⇩	
학교	- NEIS 출결사항을 확인하여 보호자 계좌로 통학비 지급

Ⅴ 행정사항

1 제출 기한

대상	제 출 자 료		제출기한	제출처
학부모	통학비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한글 서식1, 서식2>		'24. 3. 13.(수)	소속학교
공.사립 유.초.중	신청	작성방법 숙지 후 엑셀파일 작성 제출 - <엑셀 서식1> 통학비 지원신청서 - <엑셀 서식2> 통학비 산출내역서	1차: '24. 4. 1.(월) 2차: '24. 9. 6.(금)	해당 교육지원청
공.사립 고·특수				도교육청
교육 지원청		관내 학교 자료 검증 및 취합 후 엑셀파일 제출 - <엑셀 서식4> 통학비 지원신청서 - <엑셀 서식5> 통학비 학교별 세부 내역서	1차:'23. 4. 8.(월) 2차:'24. 9. 13.(금)	도교육청
공.사립 유.초.중	집행 결과 보고	작성방법 숙지 후 엑셀파일 작성 제출 - <엑셀 서식3> 통학비 집행결과	집행결과 '25. 2. 7.(금) 잔액반납 '25. 2. 19.(수)	해당 교육지원청
공.사립 고·특수				도교육청
교육 지원청		관내 학교 자료 검증 및 취합 후 엑셀파일 제출 - <엑셀 서식6> 통학비 집행결과	'25. 2. 19.(수)	도교육청

※ 제출기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처리

○ 목적지정 사업비 **집행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반납없이 타 용도 사용 가능**

○ 반납 절차

- 집행 잔액이 10만원 이상 발생하여 반납할 경우

- 반납시기: 2025. 2. 19.(수)까지

(당해년도 12월까지 반납)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학교에서 도교육청 사업부서에 정산보고 → 도교육청 사업부서에서 도교육청 재무과에 반납 고지 요청 → 반납고지서 수령 → 반납
- **공립 유치원 및 초·중학교** :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사업부서에 정산보고 → 교육지원청 사업부서에서 교육지원청 경리부서에 반납 고지 요청 → 반납고지서 수령 → 반납

* 목적지정 사업비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위 절차로 반납하고 12월까지 반납하지 못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바람

(익년도 1월 이후 반납)

- **공립학교** : 에듀파인 교육비특별회계 징수**(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목)** → 납입고지서 출력 → 납부
- **사립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해당학교에서 도교육청 재무과에 납입 고지 요청 → 납입고지서 수령 → 납부
- **사립 중학교, 사립 유치원** : 해당학교에서 교육지원청 경리부서에 납입 고지 요청 → 납입고지서 수령 → 납부

✣ 학교회계 처리 요령

☞ 당해연도 세입에서 반납 : 과오납반환결의 및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

☞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연도에서 반납 :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지출

· 세입과목 : 기타수입/전년도이월금/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원가통계비목 :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 세출과목 : 학교재무활동/반환금/반환금(원가통계비목 : 반환금)

☞ 전년도 이월금 반납 : 전년도 이월금(명시/사고이월)은 예산현액으로 관리되고, 예산현액은 이·전용이 불가능하나 교부기관에 반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용처리를 허용하며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예산관리/예산운영/이전용/예비비관리/반환금 탭에서 이용 신청

· 세출과목 : 학교재무활동/반환금/반환금(원가통계비목 : 반환금)에서 지출

【서식 1】(학부모→학교 제출, 학교 보관용)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학년반		**학생명**	
보호자명		**관계**	
주소	(상세하게 기록)		
통학수단	자가용, 시내·외버스, 기타( )	**통학거리**	Km
신청대상자 (○, X로 표시)	• **학생 : 등교( ), 하교( )**		• **학부모 : 등교( ), 하교( )**

통학비 신청 사유(해당란에 ✓표시, 기타는 작성)

1. 학교통학버스 노선 외의 원거리(편도 1Km 이상)를 통학하는 경우( )
2. 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학교통학버스 승차지역까지 이동해 오는 경우( )
3. 중증장애 이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
4. 기타( )

위와 같이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통학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학생과의 관계:) : (서명)

확인자(담임 또는 특수교육 담당) : (서명)

( ) 학교장 귀하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서식 2】(학부모→학교 제출, 학교 보관용)(예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을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 및 이용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수집하는 항목	기본	필수	(학생) 성명, 학교명, 학년 반
		선택	(보호자) 성명, 관계, 주소, 계좌번호
	민감		장애 영역
보유 및 이용 기간			정보수집일로부터 **통학비** 지원 종료 시까지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단 동의를 하지않을 경우 통학비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본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제공받는 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기관(학교포함)
이용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제공 항목	기본정보 및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정보수집일로부터 통학비 지원 종료 시까지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기관(학교포함)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여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학생 (인) 보 호 자 (인)

( )학교장 귀하

【서식 3】(학교 보관용)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신청 접수 및 심의 결과 명부

순	학년	반	성명	심사일	지급 여부(○, X)		통학비 지급 사유 (심의 결과 내용)
					학생	보호자	
1							
2							
3							

확인	담당_____(서명)	교감_____(서명)

※ 위 서식을 참고하여 학교별 실정에 맞게 서식 변경하여 작성 가능

【서식 4】(학교보관용)

개인별 출결 현황 (예시자료)

기간: 학년 반 이름:

월	수업일수	결석				지각				조퇴				결과				결석총계	지각총계	조퇴총계	결과총계
		질병	미인정	기타	인정	질병	미인정	기타	인정	질병	미인정	기타	인정	질병	미인정	기타	인정				
03월	0																	0	0	0	0
04월	10																	0	0	0	0
05월	18																	0	0	0	0
06월	22																	0	0	0	0
07월	23																	0	0	0	0
08월	9																	0	0	0	0
09월	1																	0	0	0	0
합계	**8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월 별	수업일수	등교일수	비고
등교수업일	3월	0일	0일	
	4월	10일	0일	
	5월	18일	0일	
	6월	22일	17일	6월8일부터 등교수업 시작
	7월	23일	23일	
	8월	9일	7일	8월 24일부터 특수학급 대면수업 (8/24~25-대면수업 미등교)
	9월	1일	1일	
		83일	48일	

● 출석부를 기준으로 원격학습이 아닌 실제 수업을 위한 등교일을 기준으로 작성

● 통학비는 학교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등·하교시 지급 가능

※ 방학중 방과후학교 또는 돌봄 참여를 위해 학교에 오는 경우에는 통학비 지급 대상 아님

● 매분기 지급이 원칙이나 학교 사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할 수 있음

【붙임 1】

【반납요청 관련 공문 – 사립 고등학교 예시자료】

"나 하나의 청렴 결백 솔선하면 으뜸 전북교육"

00고등학교

수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재무과장)
(경유)
제목 2024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반납요청

1. 관련: 유초등특수교육과-0000(2024.00.00.)
2. 2024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를 교부받았으나, 학생 전출로 인해 발생한 집행 잔액을 아래와 같이 반납하고자 합니다.

(단위:원)

순	반납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반납액)	비고
1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600,000	451,250	148,750	

끝.

※ 원단위 반납금지 (국고금 관리법 47조에 근거)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주요 질의 응답

Q A 1 등교 또는 하교 시에만 통학비가 발생하는 경우

Q: **등교할 때는 버스를 타고 하교할 때는 도보로 통학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경우 통학비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A: 통학비는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등교 시에만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시내·외 버스, 마을버스 등)의 학생 요금을 1일 1회 지급합니다.

이때, 학생 혼자서 등교하는 경우 학생 비용만 지급하고,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 보호자 대중교통 성인 요금을 1일 1회 함께 지급합니다.

Q A 2 통학 거리 산정 방법

Q: **통학비 지급 시 거리 실비로 계산하게 되어있는데, 통학 거리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활용하여 통학 거리를 산정합니다. 이때 출발지와 도착지의 직선거리를 측정하면 실제 통학 거리 보다 짧게 측정될 수 있으므로, 길 찾기 프로그램 등을 병행하여 실제 이동 거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금액 산출시 천원단위로 반올림하여 신청합니다.

<예시1> 자가용으로 1.6km 등·하교 하는 경우

- 산출식: 1.6km×200원×190일×2회=121,600원
- 신청금액: 122,000원

<예시2> 자가용으로 1.9km 등교 또는 하교만 하는 경우.

- 산출식: 1.9km×200원×190일 = 72,200원
- 신청금액: 72,000원

3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시 통학비 지원

Q: 등·하교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동행하는 활동보조인에게 통학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A: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함에 본인부담금만 발생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학생 등·학교를 위해 별도의 유류비 등을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통학비 지원 기준에 따른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활동보조원 소속기관에서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 통학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합니다.

4 기숙사 이용시 통학비 지원(2023학년도 신설)

Q: 주소지가 충남인 학생이 전북에 소재한 학교(전국단위 모집 등)에 배치받아 기숙사에 거주 중입니다. 지원 제외대상에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가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학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월요일(입소 1회)과 금요일(퇴소 1회) 등 정기 입·퇴사일에 발생하는 금액에 한하여 지급가능합니다.(2023학년도부터 신설) 기숙사 입사 후 거주하는 동안은 통학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통학비를 지급하지 않고, 치료지원 및 병원 진료 등 기타 개인 사유로 중도 입·퇴사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통학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학생의 경우 타시도에 거주하는 학생이므로, 실제 자가용을 이용하여 입·퇴사가 이루어지더라도 대중교통비(시외버스비 실비)를 기준으로 금액을 지급합니다.

5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시 통학비 지원

Q: 등·하교시 버스와 자가용을 돌아가며 이용하는 경우 통학비 지급기준을 어떻게 정하나요?

A: 통학비는 주된 통학 수단을 기준으로 지급기준을 수립합니다. 자가용을 주로 이용하지만, 가끔 시내버스를 이용한다면 자가용 지급기준에 따라 통학비를 지급합니다.

개별화교육지원팀(통학비 지원 심의기구)에서 통학비 지원 심의 시, 학생의 등하교에 안전하고 적합한 통학 수단이 무엇인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통학비 지급 가능 교육활동 범위

Q: 방학 중 프로그램 및 돌봄 참여나, 원격수업 및 가정체험학습 등의 경우 통학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A: 통학비는 통상적인 정규교육과정 운영에 발생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방학이나 토요프로그램 참여 등에 따른 통학비는 미지급하며, 원격수업과 가정체험학습일은 등·하교로 인한 통학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통학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정규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원격수업 기간 중 수업 및 긴급돌봄 참여 등으로 등교하는 경우는 통학비를 지급합니다.

7 체험학습, 현장실습 등의 통학비 지원

Q: 체험학습이나 현장실습 등으로 해당 장소나 기관으로 이동하는 경우 통학비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A: 실제 체험학습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나 기관으로 이동하였다면 통학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하루 이상의 체험학습으로 등교 또는 하교만 발생한 날은 편도 금액만 지급합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실습을 위해 등교 대신 해당 기관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통상으로 지급하던 금액을 기준(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시 산출한 거리 및 교통 수단으로 학교-거주지 통학비 기준으로 지원)으로 통학비를 지급합니다. 단, 학교별 학사일정상 방학기간은 제외되며, 현장실습 기관에서 교통비(현장실습 수당에 교통비가 포함된 경우도 해당)나, 별도 이동수단(차량 등)을 지원받는 경우는 중복지원으로 통학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8 통학버스 노선에 접근이 어려운 경우

Q: 학교에서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나, 차량의 운영 노선이 학생의 집근처를 경유하지 않아 개별통학해야 하는 경우 통학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계획에 따르면 '학교통학버스 노선 외의 원거리를 통학하는 경우' 통학비를 지원합니다. 통학버스 노선외 지역에 거주하며, 학교와 집까지의 통학거리가 1km이상인 경우 통학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학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탑승 장소까지 기타 교통수단을 통하여 이동하는 경우, 집에서 탑승장소까지 이동거리가 1km 이상이라면 통학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통학비는 실제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지급기준을 근거로 산출합니다.

Q A 9 통학버스 이용 불가시 통학비 지원

Q: 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가 탑승가능 인원을 초과하여 학교에서 개별 등·하교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휠체어를 타는 학생으로서 통학버스에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아 자가용으로 등·하교하는 경우 통학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지원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가 있지만, 이용이 불가능하여 자가 통학하는 상황이므로 통학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A 10 택시를 이용한 등·하교시 통학비 지원

Q: 택시를 이용하여 등·하교하는 학생의 통학비를 어떻게 지급하나요?

A: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학비 지급기준은 대중교통비(버스비)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이용하는 택시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통학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농어촌택시를 이용하는 학생이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발생 금액을 지원합니다.(통학노선이 유사한 학생들이 농어촌택시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자기부담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지원하고, 일반 택시를 이용 경우 대중교통비(버스비)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버스 노선이 없거나, 자기차량을 소유하지 않아 택시를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시·군에서 운영 중인 통학택시나, 장애인콜택시 이용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안전한 통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11 신규 선정 및 전출·입 통학비 지원

Q: 학급에 신규 배치된 학생의 통학비는 어떻게 지원 하나요?

A: 신규 선정 또는 취소, 전·입학 등으로 통학비 지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소멸시 해당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통학비 지원일수를 산정합니다.

신규 선정이나 전입 등으로 지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지원팀 통학비 지원 심의를 거쳐, 지역청 담당자와 협의 후 예산을 신청합니다.

※ 지원 자격 취득일은 포함하고, 자격 소멸일은 미포함

12 통학비 지급 주소지 기준

Q: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A지역인 학생이 운동부 진학을 위하여 B지역 학교에 진학 하였습니다. B지역에 위치한 운동부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고, 숙소와 학교까지의 거리는 1.9km입니다. 이 경우 통학비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 중 어디를 기준으로 지급하나요?

A: 통학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학교는 주민등록등본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여 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재난 등으로 인한 임시 시설 거주)로 등본과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사유를 확인하고,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를 거쳐 통학비 지원을 결정합니다. 등본과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지원거리와 방법을 결정합니다.